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108567
결재일자	2015.9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어르신복지팀 장	어르신복지과 장	주민생활복지 국
	박재희	김경화	代김경화
			전결 09/23 오영수
협 조	검진팀장 김영임		

2015. 저소득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계획

<p>대 상 :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중 희망자 ※ 희망자 접수 : 2015. 9. 25.(금) ~ 10. 7.(수)</p> <p>검진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진단 : 2015. 10. 26.(월) ~ 10. 30.(금) 2차진단 : 1차 검진결과 재진단자로 결정된 자 <p>진단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진단 : 기본진료, 혈액검사, 기타검사 2차진단 : 1차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평가 상담 등 <p>진단기관 : 동작구 보건소</p> <p>소요예산 : 1,491천원(시비 1,045 구비 446)</p>
--

주민생활복지국
(어르신복지과)

2015년 저소득 어르신 건강검진 실시 계획

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발견·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.

I 추진근거

- ❑ 노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(건강진단 등)
- ❑ 보건복지부 『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』

II 추진개요

- ❑ 기 간 : 2015. 10. 26.(월) ~ 11. 11.(수)
- ❑ 대 상
 -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
 - 기타 구청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❑ 희망자 접수기간 : 2015. 9. 25.(금) ~ 10. 7.(수)
 - 접수장소 : 15개 동주민센터 (동별 3명)
- ❑ 진단기관 : 동작구 보건소(1층 건강증진센터)
- ❑ 진단방법
 - 1차 진단 :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1차 건강진단 항목을 실시
 - 2차 진단 : 1차 진단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
- ❑ 소요예산 : 1,491천원 (시비 1,045, 구비 446)

■ 희망자 접수기간 : 2015. 9. 25.(금) ~ 10. 7.(수)

■ 건강진단 일정

- 1차 진단 : 2015. 10. 26.(월) ~ 10. 30.(금) - 5일간
- 2차 진단 : 2015. 11. 5.(월) ~ 11. 11.(수) - 5일간
- 1차 검진 결과 재 진단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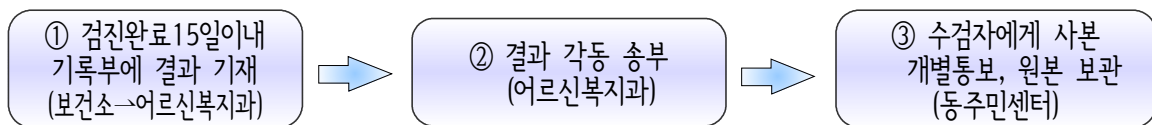
■ 진단항목

- 1차 진단 : 기본진료, 혈액검사, 기타검사
 - 기본진료 : 진찰, 체위검사, 치과검사
 - 혈액검사 : 혈색소, 총콜레스테롤, 혈청지오티, 혈청지피티, 혈당
 - 기타검사 : 요검사, 안검사, 간이인지기능검사, 흉부X선 간접촬영
- 2차 진단 :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평가 상담, 당뇨병, 인지기능장애 등

■ 진단방법

- 해당일에 보건소에 내원하여 검진
- 건강진단은 공복인 상태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오전 중에 검진을 완료하도록 하며,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공복상태를 유지토록 안내

■ 진단결과 통보



■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(동주민센터) : 2015. 10. 7.(수) 한

■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(구청) : 2015. 10. 12.(월)

■ 동주민센터

- 차상위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발굴·추천
-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검진일정 및 검진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
- '노인건강진단기록부'의 사전기록사항(①~⑧항)을 기재하여 검진당일 어르신께서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
- 검진당일 행정차량 이용, 담당자의 인솔하에 검진 실시

■ 보건소

- 검진인력·장비, 소요 의료 기자재 및 시약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검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
- 건강진단 실시 후 15일 이내에 청구서 및 검진내역서를 첨부하여 어르신복지과에 검진비 청구

- 붙임 1. 건강진단기록부 양식
2. 2015년 건강진단 항목. 끝.

< 붙임 1 > - 건강진단 기록부

<u>노인건강진단기록부</u>	
실시기관명(시·군·구)	<p>< 기재 및 관리요령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진단기록부 ①-⑧항과 ⑫항은 실시기관이 기재하고 ⑩-⑪항은 검진기관에 기재2. ⑤-⑨항은 해당란에 ○표3. 질병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내 보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4. 본 기록부는 읍·면·동에 보관·관리하며, 주소지 이동시 본인에게 교부하여 신거주지에 제출하여 계속 관리토록 지도한다.
기 관 장 확 인	

구 분	안 질 환				치매검사	골다공증검사	검진 일자	검진 기관명	확인자 ㉠	
	안압 검사	각막곡률 검사	굴절 및 조정검사	검사 조건	치매척도검사 (GDS 또는 CDR)	양방사선(광자) 골밀도 검사				
건강 진단	200									
	200									
	200									
	진찰종합소견									
	2차진단결과 조치의견									
㉠ 진단결과 조치사항 (시·군·구)	200 . . .									
	200 . . .									
	200 . . .									
㉡ 기타 특기사항										

<붙임 2 >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, 검진비용, 대상자 및 검사방법

1. 1차 검진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1.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○ 문진과 진찰 및 상담 ○ 신장, 체중, 비만도, 허리둘레 ○ 혈압측정 ○ 시력, 청력 측정 ○ 결과통보 및 입력 등	가-1 (AA154)×52.1%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,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. - 만 70세와 74세 대상자는 「인지기능관련 문항」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고, 5개 질문은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점수산정기준 : ①아니다(0점), ②가끔(조금)그렇다(1점), ③자주(많이)그렇다(2점)이며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2차 인지기능장애(KDSQ-C) 대상 ○ 신체계측은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 - 비만도는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)로 보고한다. -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(mid-axillary plane)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. - 다만, 신장·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. ○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,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.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. ○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, 만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.
2. 흉부방사선 촬영 - 직접촬영	촬영 및 판독료+재료대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으로 실시한다.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촬영 및 판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film-screen system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필름(14"×14") · 필름(14"×17") -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, Full PACS 	다-121 (G2101) + 치료재료금액표 ^{주1)} " 방사선 영상처리비용 ^{주2)}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. ○ 흉부방사선 촬영 영상획득 방법 및 필름판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상획득방법은 film-screen system,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 모두 가능하며, Full PACS는 digital radiography system(CR 또는 DR)으로 획득한 영상을 이용한다. -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. -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판독한다. -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결핵과 전문의가 판독할 수 있다. ※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3. 요검사 ○ 요단백	나-1 (B0010)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요검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(Urine Test Strip)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(요검사는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).
4. 혈액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혈색소 ○ 공복혈당 ○ 총콜레스테롤 ○ HDL콜레스테롤 ○ 트리글리세라이드 ○ LDL 콜레스테롤 ○ AST(SGOT) ○ ALT(SGPT) 	나-101 (B1010) 나-371 (C3711) 나-241 (C2411) 나-242 (C2420) 나-244 (C2443) 나-243 (C2430) 나-257 (B2570) 나-258 (B2580) 나-271 (B2710)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○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(1회용 주사침포함)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(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)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. -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,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/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다.(기존에 채혈한 혈액을 활용) -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- NADH UV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 - SZASZ법 또는 IFCC(Carboxy-GGNA)법으로 실시한다.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사방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감마지티피(γ-GTP) ○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○ 신사구체여과율(e-GFR) 	나-375 (C3750) -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. - 나이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로 다음의 MDRD(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)방식에 따라 계산한다. $MDRD-GFR(ml/min/1.73m^2)=186 \times (\text{혈청 크레아티닌 농도})^{-1.154} \times (\text{나이})^{-0.203} \times 0.742$, 여성의 경우 ※ 단,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표준화 참고물질에 대비하여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하여 측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IDMS-traceable MDRD 공식을 사용한다 $eGFR(ml/min/1.73m^2)=175 \times (\text{혈청 크레아티닌 농도})^{-1.154} \times (\text{나이})^{-0.203} \times 0.742$, 여성의 경우
<p>5. 구강검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진과 진찰 및 상담 ○ 치아검사 ○ 치주조직검사 ○ 조치 사항 	가-1 (AA100)×52.1%	○ 일반건강검진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. -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,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. ○ 치아검사는 치아우식증, 인접면우식의심치아, 수복치아, 상실치아에 대하여 검사한다. - 치아우식증은 유병여부를 기재하고, 치아 사이 치아우식증이 의심되는 경우 인접면우식의심치아로 기재한다. - 수복치아는 치아우식소견이 없고 영구 충전 재료로 치료한 치아 유무를 기재한다. - 상실치아는 치아 기능 회복을 위해 수복이 필요한 상실치아 유무를 기재한다. ○ 치주조직검사는 치은염증과 치석으로 나누어서 육안으로 검사한다. ○ 문진표 평가시 치과병력, 구강건강인식도 및 구강건강습관문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에 기재하고,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. ○ 검진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구강상병의 의심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를 사후관리 권고에 기재하고, 이를 수검자에게 전달한다.

주1) 치료재료급여·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

주2) 흉부방사선 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(CR) 또는 디지털촬영장치(DR),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(Full Pacs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·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행위)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중 병원,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.

2. 2차 검진

검사항목	검진비용 (분류번호)	대상자	검 사 방 법
1.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○ 건강검진 결과 상담 ○ 건강위험평가 상담 ○ 보건교육 ○ 결과통보 및 입력 등	가-1 (AA155)	○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,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	○ 1차 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 - 수검자가 작성한 질환력(과거력, 가족력) 및 신체증상에 근거하여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○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,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.
2. 고혈압 ○ 혈압측정		○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	○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,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. 측정결과 수축기압 120mmHg이상 또는 이완기압 80mmHg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이상의 간격을 둔 후 수은혈압계로 재측정을 실시한다.
3. 당뇨병 ○ 공복혈당	나-371 (C3711) 나-371 (C3710)	○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	○ 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(1회용 주사침 포함)으로 채혈한다. - 효소법으로 측정한다(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). -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. ※ 각 검사법에 따라 측정된 후 1차·2차 검진결과 두 번 모두 공복혈당이 126g/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, 100g/dL 미만인 경우 정상으로, 이외에는 공복혈당장애로 판정한다.
4. 인지기능장애 ○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	나-622 (F6221)×20%	○ 만 70세와 74세 일반건 강검진 1차 검진 수검자 중 검진 결과 인지기능 장애 고위험군	○ [별지 제21호서식]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다. -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,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. ※ 점수산정기준 : ①아니다: 0점, ②가끔(조금)그렇다: 1점, ③자주(많이)그렇다: 2점